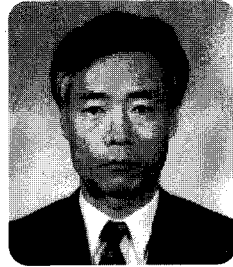


산업재산권진단제도 시행에 부쳐



이집중
(한국발명진흥회 이사)

1. 서 언

지금 세계각국은 급변하는 기술환경속에서 자국의 기술적 우위를 점유하기 위한 기술개발 노력과 개발된 기술을 산업재산권화 시키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WTO출범등으로 이러한 선진국등의 특허공세는 더욱 치열해져 가는 추세로 산업재산권관리체계가 미흡한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기술개발 및 수출등 기업경영활동에 지대한 영향을 받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는 산업재산권 출원건수가 20만건으로 세계 상위권의 출원대국이라 하지만 대부분 일부 대기업에 편중되어 있을 뿐 아니라 내국인 특허비중이 낮고 해외출원이 미비하여 외국과의 산업재산권 분쟁이 크게 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국내기업중 특허전담부서를 가진 기업은 전체 제조업체의 1%로도 못미치는 수준에 불과하고 특히 특허정보의 조사 및 분석등 사전진단활동은 효율적인 연구개발의 방향설정과 기술도입 협상력제고 및 필요기술만의 전략적 도입을 위한 필수적요소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중소기업의 경우 이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사전 선행기술조사없이 기술개발에 착수함에 따른 중복투자 및 연구개발결과의 무용지물사례는 물론 낡은 기술 또는 중복기술을 도입하는 사례가 많아 그동안 이에 대한 시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대한 대책으로 도입된 산

업재산권 진단제도는 통상산업부로부터 총괄 주관기관으로 지정받은 우리 진흥회가 그동안 지원대상 적격업체의 선정기준 및 세부사업운용요령 마련등 준비작업을 추진하여 비로소 시행에 이르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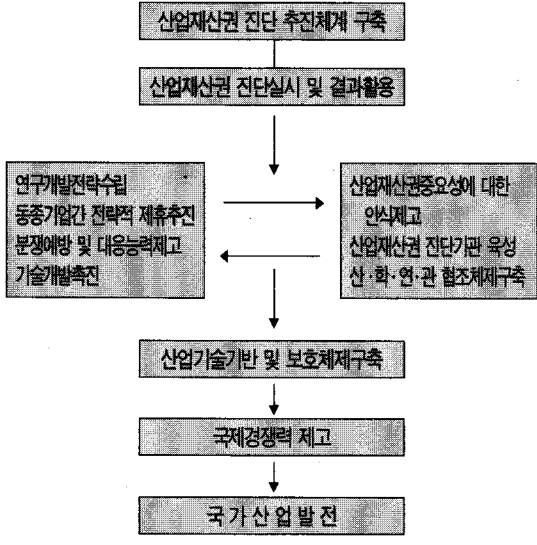
2. 산업재산권 진단제도란?

통상산업부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공업 및 에너지 기술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및 동시행령”에 의거 추진되는 산업재산권 진단 및 보호체제 구축사업으로써 자체적으로 생산기술 및 기술개발활동에 대한 산업재산권 관리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은 국내 중소·중견기업등이 연구개발착수 또는 기술도입추진 이전에 특허전문가 집단으로 부터 관련기술의 국내·외 선행기술조사 및 분석등 사전 진단을 통해 기술동향, 연구개발추진방향 및 분쟁발생 대응책 수립등에 대한 종합적인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진단비용을 정부가 보조해 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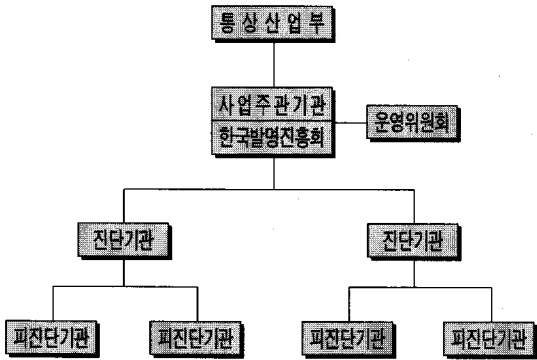
3. 추진목표는?

산업재산권 진단제도시행을 통한 종합적인 산업재산권 지원기관 육성 및 산·학·연·관 협

조체제구축과 연구개발방향제시 및 기술도입의 전략적 추진등 기술개발활동을 촉진하고 기술제휴촉진 및 특허분쟁에 능동적으로 대처케함으로써 국내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와 나아가 국가 산업발전에 기여하는 데 있다.



4. 운영체제는?



■ 사업주관 기관

진단사업의 세부추진계획수립 및 추진, 운영위원회 운영, 진단사업수행에 대한 진단비용 지

원 및 지도감독등 총괄수행

■ 운영위원회

진단사업계획확정, 진단기관·피진단기관 및 진단과제 심의·선정, 진단사업결과에 대한 종합평가

■ 진단기관

사업주관기관과 피진단기관(업체)으로부터 진단자금을 지원받아 피진단기관(업체)이 진단을 요구하는 품목, 기술에 대한 산업재산권 진단을 수행

■ 피진단기관

진단사업비를 일부 부담하여 진단결과를 활용하고자 하는 업종별 단체 또는 조합, 대학, 국·공립 및 비영리 연구법인 연구개발투자금액이 매출액대비 일정비율이상인 중소·중견기업 등

5. 진단수행내용은?

■ 선행기술조사

연구개발 착수, 기술도입추진 이전에 자체구축된 DB 또는 대민 특허정보서비스 기관의 특허 DB를 이용하여 관련기술의 국내·외 선행기술 조사, 기술정보수집

■ 특허기술분석도(Patent Map) 작성

수집된 특허기술정보를 분석하여 기술정보적, 경영정보적, 권리정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Patent Map작성

■ 진단 및 분석보고서 작성

조사된 특허기술정보와 Patent Map을 활용

※ 중견기업이라 함은 총자산 200,000백만원 미만, 매출액 100,000백만원 미만, 상시근로자수 3,000인 미만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규모를 초과하는 기업을 말함.

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과 실시일선 신청시 우선조치 및 기술개발(직무발명) 성공사례 발표회 사례발표등 제반지원활동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11. 기대효과는?

■ 이 제도의 시행에 따른 효과는 다음과 같이 기대할 수 있겠다.

- 연구개발의 방향설정 및 정확한 산업재산권 소유현황파악지원으로 기술개발전략수립의 용이, 중복투자방지 및 기술료 절감등 연구개발활동의 효율성제고를 통한 기술개발촉진유도
- 크로스라이센스, 특허공유 및 공동개발 등의 유도를 통한 관련기업간 전략적 제휴촉진 및 국제경쟁력제고
- 사전 산업재산권 분쟁예방 및 분쟁발생시 적극적인 대처능력 구비
- 산업재산권 관련 자문을 해줄 수 있는 종합적인 지원기관 육성
- 기업경영에 있어서의 산업재산권의 중요성에 대한 마인드확산 및 산·학·연·관 협조체제 구축
- 산업재산권 획득 및 실시촉진등 기술개발촉진을 통한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국제경쟁력제고와 나아가 국가산업발전에 기여

■ 또한 우리 진흥회는 앞으로 이 제도의 이용을 통한 개발기술이 권리화(출원)된 경우 전국우수발명품전시회등 각종 지원행사 및 포상등 지원제도이용 신청시 우선적인 해

12. 앞으로 추진일정은?

우선 이달(2월)부터 신청에 의해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을 지정하고 3월부터 진단대상과제를 모집·선정을 통해 4월부터 진단을 실시할 예정이며 이 제도가 시행초기임을 감안 진단기관 및 피진단기관·과제 선정은 2차 걸쳐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 추진계획일정은 다음과 같다.

추진내용	추진일정	비고
- 사업안내 및 홍보	연중	주요일간지 및 정기간행물 게재
- 진단기관신청접수 및	지정	
• 1차	'96. 2. 7 - 2. 26	(20일간)
• 2차	'96. 5. 6 - 5. 30	(25일간)
- 피진단기관·진단과제 신청접수 및 선정		
• 1차	'96. 3. 11 - 3. 30	(20일간)
• 2차	'96. 5. 6 - 5. 30	(25일간)
- 진단실시		
• 1차	'96. 4. 15 - 7. 13	(3개월간)
• 2차	'96. 6. 17 - 9. 14	(3개월간)
- 운영위원회 개최	'96. 1·2·4·6·11월	5회
- 종합평가 및 익년도	'96. 9월 - 11월	
- 사후관리 및 지도	사업 계획수립 '96년 7월이후	지속

문의처

한국발명진흥회 지적재산권 관리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16-17(성우아카데미빌딩5층)
전화 557-1077/8(교 211) / 팩스 554-1532